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6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김 건 · 이소희 · 정성국
김태호 · 김기웅 · 김석기
김기현 · 김재섭 · 김예지
안상훈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2008년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음.

이 협정의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과 테러 행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양국 간 범죄정보의 실시간 교환이었으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들어 한·미 양국은 범죄정보 교환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형사개인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라.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형사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형사개인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테러 계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형사개인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과 처리 기록의 2년간 보존·폐기, 형사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형사개인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정"이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2008년 11월 7일 체결되어 2008년 12월 2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그 부속서를 포함한다.
2. "형사개인정보"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대상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나. 지문(指紋) 정보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형사사법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미합중국을 말한다.

4. "국가담당자"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나. 상대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5. "정보주체"란 형사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
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의 또는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 문
구 또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정을 해석·적용한다.

제5조(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① 상대국에 제공될 수 있는 형사개
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사형·무기 또
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방화에

관한 범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죄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7.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2. 「여권법」에 규정된 죄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규정된 죄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5.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및 제95조에 규정된 죄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9.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죄
20.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에는 그 범죄의 예비·음모 또는 미수범을 포함한다.

제6조(형사개인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청장은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형사개인정보를 수집·관리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라 상대국과 형사개인정보의 신청, 조회 및 교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형사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상대국 국가담당자와 협의하여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과 상대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형사개인정보 교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안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과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연계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그 밖에 형사개인정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② 제1항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연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형사개인정보의 제공) ①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형사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보유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제공범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의 형사개인정보를 요청할 시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없음을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국가담당자가 특정 개인에 대한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정보(이하 “상세정보”라고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그 상세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비전자적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및 요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테러행위 등 위험인물에 대한 형사개인정보의 공유)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협정에 따라 테러 관련 행위 등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테러행위등 위험인물”이라 한다)에 관한 형사개인정보를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1. 테러나 테러 관련 행위를 계획·준비하거나 실행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

② 테러행위등 위험인물의 선정기준과 공유하는 형사개인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대국에 대한 형사개인정보 요청) ① 우리나라 국가담당자는 범죄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대하여 형사개인정보의 제공·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형사개인정보 제공·공유 요청의 범위·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 제공의 제한) ①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수사 또는 기소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보의 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5.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6. 그 밖에 협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의 제공·공유의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형사개인정보의 수정·차단 및 삭제) ① 경찰청장은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형사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그 정보의 수집이나 추가 처리가 이 법 또는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 상대국 국가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수정, 차단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형사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정보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국 국

가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상대국에 제공한 형사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정·차단·삭제 및 통지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형사개인정보 처리의 기록·보존 등) ①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의 수집·제공·공유 등 처리에 관한 상황을 제7조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에 입력·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사개인정보의 수집·제공·공유 등 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록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5조(형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형사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장은 형사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협정에 따라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형사개인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형사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형사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형사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처리 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자신의 형사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3. 자신의 형사개인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1. 형사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사 또는 기소 등 형사절차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정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협의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협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형사개인정보의 제공·공유 및 이용의 목적·범위·조건에 관한 사항
3.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 구축·운영과 국가 간 연계·호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협정 이행과 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 구성과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정 종료 시 정보 처리) ①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경찰청장은 협정 종료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형사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협정 종료 전에 제공된 형사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협정 종료 후에도 이 법의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기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경찰청장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협정 이행)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또는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형사개인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